#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

- I.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 Ⅱ. 그 동안 중소유통업 보호대책 추진
- Ⅲ.「유통산업발전법」주요 개정내용
- Ⅳ. 정 · 관계 및 관련업계 · 소비자의 동향
- Ⅴ. 주요 논쟁(쟁점)되는 사항
- Ⅵ. SSM 등의 입지제한을 위한「도시계획조례」개정
- Ⅷ. 향후 추진계획

【 참고자료 】

# <u>「유통산업발전법」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u>

- ◇ 시·군의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개정공포 및 동법시행령 입법예고 중
- ◇ 시·군 및 각계의 의견을 들어 도내의 영업제한 일관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 도의 대응방안과 정책건의 사항 발표

## I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총계		홈 플러스	롯데 마트	이마트	기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42	19	6	6	4	3	<b>30</b> (23)	4 (4)	15 (10)	1 (1)	10 (8)	

O(영업시간) 대부분 종전부터 08:00~24:00 범위 내에서 영업 중

-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및 "이마트 천안점"은 24시간 영업

## Ⅱ □ 동안 중소유통업 보호대책 추진

### □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제한 조례 개정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 개정완료(14개 시군), 추진 중(아산시) ※ 계룡시는 제정생략
  - ➡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제한으로 지역상권 보호

### ②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추진

- ○(예산센터) 부지 6,411 m² 건축1,114 m² / '11. 12. 완공
  - 사업비 30억원(광특18 지방비9, 민자3), '12. 3월 운영예정
- ○(천안센터) 부지 6,833 m² 건축4,000 m² / '12. 12. 완공예정
  - 사업비 68.3억원(광특41 지방비20.5 민자6.8), '13. 2월 운영예정

## 「유통산업발전법」주요 개정내용

##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i)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8시 범위 내
    - ii) 의무휴업 일수 : 매월 1 ~ 2일 범위 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예 : 농협하나로마트)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천㎡ 이상으로 시·군·구에 등록
    - \* (준대규모점포) 3천㎡ 미만으로 대기업의 직영 또는 가맹점ㆍ체인점 등
    - \* (SSM) 준대규모점포 중 점포개업 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 등에서 부담한 가맹점·체인점 등(사업조정제도의 적용대상 여부 판단 기준)
- ❷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 대규모점포 및 SSM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②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 7~2. 27.)

- 「유통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상가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②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1회 위반(1천만원), 2회 위반(2천만원), 3회 이상 위반(3천만원)

## Ⅳ 정·관계 및 업계·소비자의 동향

### ① 국 회

- O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진출을 5년간 금지방안 추진, 의무휴업일도 4일까지 확대논의(여당)
-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개정 촉구결의(2.13. 지경위)

## ② **전국 지자체**(시·군)

- O「유통법」개정을 계기로 이를 반영한 조례개정 준비 중
- 법은 개정됐지만 규제가 가능한 대규모점포 범위 및 영업시간 위반 시 처분규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 후 조례개정 추진
- ※ 전주시의 경우, 대규모점포 범위, 위반자 처분규정 누락 및 시행령 개정한 날부터 개정조례 시행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하게 조례 개정
- 지자체마다 심야 시간대(0시~8시)의 영업금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월 2일 휴업 관련 평일 또는 휴일로 할지 다소 차이

#### ③ 유통업계

- O(중소유통업) 대형마트로 집중된 고객의 분산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계기로 환영
- O(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에 대해 "영업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평등권" 등의 침해라고 헌법소원 청구('12.2.17.)
  - 특히, 휴일 휴업은 매출에 막대한 타격 주장
    - ※ 매출액비율(한국체인스토아): 일요일20.2%, 토요일 19.6%, 평일11.1~13.7%
  - 「입주상인」은 "우리도 똑같은 소상인"이라며 생존권 위협 비판

#### 4 소비자단체

- O 골목상권 살린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 O 맞벌이 부부는 휴일휴업에 불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문

### 5 유통업전문가

○ 강제휴무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못 갖추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

## Ⅴ 주요 논쟁(쟁점)되는 사항

## ① **영업제한 시간** (0시~8시)

- O「유통법」에서 0시~8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타 지자체에서 최대범위로 적용하므로 우리 道도 최대 적용
  - ➡ 영업제한 시간: 0시~8시(8시간)

## **② 의무휴업일 지정** (1~2일)

- 의무휴업 일수
- O「유통법」개정취지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 등)로 부터 영세상인 보호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 의무휴업 일수 : 2일
- ② 조례에 의무휴업일(일요일, 평일) 명문화 여부

유 형 1

- O 조례에 의무휴업일(일요일, 평일)을 지정하여 명문화
  - 각 계의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휴무일 지정
  - 휴업일 지정변경 남발 억제(안정적 휴업일제 운영)

유 형 2

- O 의무휴업 일을 조례에서 시장·군수가 별도 지정 위임
  - 조례시행규칙 별도 제정, 휴업일 지정에 시간필요ㆍ지연
  -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임의변경 시 혼란 초래

#### 3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 형 1

## O 매월 『일요일』로 의무휴업 일을 지정(2회)

- 휴일 지역상권으로 고객 분산, 법령개정 취지 최대 반영
- 지역상권 활성화 증대 효과, 일부 소비자의 불만 우려
- ※(예)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일요일,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유 형

### O 매월 『일요일』 및 『평일』을 각각 1일씩 휴업 지정

- 휴업 일의 이원화로 소비자의 혼란 야기
- 지역상권보호 효과는 감소되어 지역상권의 불만 초래
- ※(예)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및 세 번째 수요일 등

유 형 3

### O 매월 『평일』에만 의무휴업 일로 지정(2회)

-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저조, 법령개정 의미가 무색
- 일부 중소상인들은 휴일휴업 지정에 강한 불만 표출
- ※(예)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수요일, 두 번째 및 네 번째 수요일

유 형

## O 대형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2회)

- 시・군에서 대형마트 휴업일(2회) 신청 받아 지정・공고
- '유형3'과 유사하게 시행 가능, 지역상권 활성화 저조
- 시장·군수의 권한 포기로 인식, 사회적 물의 우려

## Ⅵ SSM 등의 입지제한을 위한「도시계획조례」개정

- ◇「유통법」에 의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SSM 등의 입점을 제한 가능
- ◇ '전통상업 보존구역'이외의 골목상권에는 진입제한 방안이 없어 토박이 SSM 등으로부터 영세점포의 생존권을 위협
  - **SSM 등의 건축면적 기준을 축소, 입지제한토록 관련조례 개정**

## <u> 1</u> 현 실태

-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1조제1항에
  -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는 슈퍼마켓의 건축면적을 1천m²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됨
- 건축면적이 1천m² 이상일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최대 2천m² 미만까지 건축 가능
  - SSM 측에서는 골목상권까지 판매시설로 입점 추세

## **②「도시계획조례」의 판매시설 건축가능면적 현황**

- 일부 시·군에서는 「국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 건축 면적(2천m² 미만)을 인용하여 조례로 규정함
  - ※ 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을 1천㎡ 미만으로 개정완료 : 논산, 청양
- 도내 SSM의 매장면적은 평균 1,060㎡인 반면, 영세슈퍼마켓은 대부분 100㎡ 미만으로 대형마트 및 SSM과 경쟁 불가
- 최소한 매장의 규모만이라도 입지제한이 되도록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판매시설의 건축가능면적 축소가 시급함

## ③ 시·군의 협조사항

- O 영업품목 구분 없이 판매시설의 건축면적을 일괄 축소보다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47129)"에 한하여 축소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최소화
  - ➡ 판매시설의 건축면적을 「국계법시행령」에서 정한 슈퍼마켓 수준 (1천㎡ 미만)으로 축소토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상반기)

## Ⅷ 향후 추진계획

□「유통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2. 27.까지, 지경부)
□ 대규모점포 등 입점제한 관련 조례 개정표준안 마련(3월초, 道)
○ 토론회 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안 마련
□「유통법시행령」개정령 공포・시행(3월중, 지경부)
□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3월중, 시・군)
○ 유통법시행령 개정령 공포와 동시 입법예고 공고
□ 대규모점포 등 입점제한 관련 조례 개정완료(4월, 시・군)
○ 시・군에서는 개정절차 추진을 최단기로 강구하여 조기 완료 - 차기 의회 의사일정에 반드시 상정, 지역상권 활성화 극대화
□ 시・군의「도시계획조례」개정완료(상반기)

#### 【 참고자료 】

- < 참고1 >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 < 참고2 > 시·군별「도시계획조례」의 판매시설 건축가능 면적

O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부서는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

# <u>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 현황</u>

□ 대 형 마 트 : 19개(매장면적 3천m² 이상)

□ 준대규모점포 : 30개(SSM 및 SSM의 순수가맹점 포함)

□ SSM(기업형슈퍼마켓): 23개(개인사업자인 순수가맹점 제외)

	총 계	대형마트					SSM(super supermarket)				
시군별			홈 플러스	롯데 마트	이마트	기 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는다트 에브리데이	GS 슈퍼
계	<b>42</b> (7)	19	6	6	4	3	<b>23</b> (7)	4	10 (5)	1	8 (2)
천안시	<b>18</b> (2)	7	2	2	2	1	<b>11</b> (2)	3	6 (1)		2 (1)
공주시	<b>1</b> (1)						1				1 (1)
보령시	4	2	1		1		2		1	1	
아산시	7	3		1	1	1	4		3		1
서산시	2	2		1		1					
논산시	2	1	1				1				1
계룡시	2	1	1				1	1			
금산군	(1)								(1)		
연기군	1	1	1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1		1							
예산군	<b>1</b> (1)						1		(1)		1
태안군	(2)								(2)		
당진군	3	1		1			2				2
순수가맹				가맹점	(7)		(5)		(2)		

### < 참고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에서 위임한 -

## <u>시·군별「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건축가능 면적</u>

 $(m^2)$ 

Д	군 별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준 주 거 지 역	비고	
국 계 법 시 행 령		(슈퍼) 1,000 미만 <b>(판매) 2,000 미만</b>	(슈퍼) 1,000 미만 <b>(판매) 2,000 미만</b>	(슈퍼) 1,000 미만 <b>(판매) 2,000 미만</b>	(슈퍼) 1,000 미만 <b>(판매) 제한 없음</b>	※ 판매시설은 시군의 조례에 위임	
	천안시	건축 불가	1,000 미만	2,000 미만	제한 없음	1~2종 주거지역 제한	
	공주시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3,000 이하		
	보령시	건축불가	1,000 미만	2,000 미만	1,000 미만	1~2종, 준주거지역 제한	
	아산시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제한 없음	1~3종 주거지역 제한	
l _ , , [	서산시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제한 없음		
도시	논산시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개정완료	
계획	계룡시	건축 불가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이하	개정완료	
조례	당진시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제한 없음		
	금산군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제한 없음	1~3종 주거지역 제한	
판매	연기군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제한 없음		
시설	부여군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제한 없음	1~3종 주거지역 제한	
	서천군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1,000 미만	준주거지역 제한	
	청양군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개정완료	
	홍성군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3,000 미만	1~3종 주거지역 제한	
	예산군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3,000 이상	1~3종 주거지역 제한	
	태안군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3,000 미만		
타	부산시	건축 불가	건축불가	건축불가	3,000 미만	주거지역 제한	
지역	군산시	건축 불가	1,0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주거지역 제한	